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재형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재형 다이내믹 코리아 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<u>3. 트러스톤 다이내믹 코리아 30 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